

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 절차의 증대한 변화 : 중요 사건의 전원합의체 공개 구술변론 +
변론 전체를 언론매체로 중개 + 관련 협회, 학회, 단체 등으로부터 쟁점 관련 의견서 요
청 + 사회적 의견 수렴



대법원 재판에서 증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. 중요한 쟁점에 대해 사건 당사자 뿐
만 아니라 관련 협회, 학회, 이익단체 등으로부터 각자의 주장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
기회를 부여합니다. 의견서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나 정보를 제공받는 등 폭넓은 의견수
렴을 거쳐 판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.

미국소송의 Amicus Curiae 제도와 유사합니다. 구체적 사건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
지, 또 앞으로 어떤 모습을 발전할 지 등등 흥미진진하고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. 우리나
라 소송분야의 큰 발전으로 생각됩니다.

이번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사안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보도자료에 적혀 있습니다. 그 중 사건의 쟁점요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
○ 논쟁의 배경

-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아무런 위임관계 등이 없는 까닭에,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서 과연 형법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형법학계에서 오래전부터 의문이 제기되어 옴

- 거래 실무 측면에서 볼 때, 다른 나라에서는 부동산 거래에서 '중도금' 제도를 찾아보기 어려움. 선진 각국에서는 공증인의 관여나 각종 보험 제도와 에스크로 계정 활용 등이 상당히 보편화 되어 있음. 이중매도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예는 보기 어려움

- 이중매도인의 배임죄 성부에 관한 기존 판례의 변경 여부는 그러한 경우 제2매매의 사법상 효력 등 민사법 이론과 실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쟁점임. 법경제학적 측면에서 분석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음

-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 변천의 연혁, 형사적 처벌의 필요성 유무, 배임죄의 요건, 관련 민사법 분야에 대한 영향 등 법률적 쟁점 외에도, 기존 판례의 변경 여부가 부동산 거래 방식 선진화 등 거래 실무에 미치는 사회·경제적 파급력이 쟁점이 되는 재판

임

○ 재판장(대법원장 김명수)은 2018. 1. 30. (화) [한국공인중개사협회, 대한법무사협회, 대한변호사협회, 전국은행연합회, 한국민사법학회, 한국법경제학회](#) 등 6개 단체에 「형사소송규칙」 제161조의 제2항과 「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」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

쟁점에 관한 의견서 제출 요청서를 발송함

- 지난 2017년 12월 개정된 「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」을 적용하여 **의견서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도 함께 요청하였고, 의견서 등이 제출되면 국고에서 수당을 지급할 것임 → 폭넓은 의견수렴**

- 이와 별도로, 기일에 대법정으로 출석하여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참고인(2인 예상) 선정에 관하여는 검찰 및 변호인단과 협의 진행 중임

○ 재판부와 검사, 변호인, 참고인들 간의 질의응답 등 전 과정을 가감없이 공개

- 재판결과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파급력이 있는 사건을 변론에 회부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대

- 법령해석을 통일하고 사회적·국가적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해석과 규범으로서의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심인 대법원에서의 재판 심리의 실재를 국민들께 투명하게 전달

○ 판결 선고는 변론종결 후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최종토론(전원합의기일)을 거쳐 2~3개월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, 정확한 일정은 추후 공지함

첨부: 대법원 보도자료

Global 기업법무, 국제계약, 계약분쟁, 손해배상, Claim, License, 비용절감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